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출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9년 7월 9일

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동의연월일 : 2019년 7월 9일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“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 :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다. 위 원 수 : 7명 이내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내지 제10조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 제78조

관련법규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7조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8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, 윤리심사,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9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과 교체선임) ① 상임위원 및 상임 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 원장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교체선임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】

제78조(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) ① 의장은 의원자격 심사대상 의원으 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. 다만,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자격심사청구서만 으로 심사할 수 있다.

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.

④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을 한 때에는 의장이 그 결과를 의원 자격심사 청구 의원과 피청구 의원에게 송부한다.